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

◇ 제·개정 이유

- 평가지표 및 기준개선을 통해 합리적 품질평가를 도모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물량 배분의 적절성 제고
- 사업의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 정비 추진

◇ 주요내용

가. 사업 평가관련 지표 및 기준변경(제25조, [별표 3])

- 조사분석의 검색 중심의 업무범위 조정에 따라 **선행디자인의 충실한 조사 및 심사관의 정확한 판단의 지원 여부**를 중점으로 평가
-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수 평가관이 협의 평가하는 **'심층평가'**의 비율을 높이고 **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** 규정을 신설

나. 조사원·분류원의 교육관련 규정 정비(제12조, 제13조)

- 연수 가능한 **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제고**하여 역량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
- 저평가 조사원에 대한 의무 교육규정을 삭제하여 **품질관리 및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운영 유도**